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84-11

# 개인의 해외투자자와 세금

2008



##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 등에 따라 개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문제를 알지 못하여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납세자가 국세청에 자주 문의하는 사항과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각 투자형태별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해당 항목을 찾아보면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여러분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여 주고 아울러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8월

국세조세관리관

강성희

# 목 차

## 제1편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b>제1장</b>	해외직접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및 신고방법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11</li> <li>2.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14</li> <li>3. 해외현지기업으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및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공제방법은? ..... 16</li> <li>4.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 선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8</li> <li>5.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해외투자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19</li> </ul>		
<b>제2장</b>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안내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 23</li> <li>7.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24</li> </ul>		
<b>제3장</b>	소득세신고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국세청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무엇이고 언제 제출하나요? ..... 27</li> <li>9.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개인사정으로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28</li> <li>10.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해외개인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 29</li> </ul>		

- 11.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한 사실은 없고 주식만 취득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 30
- 12. 해외현지기업에 공동투자한 경우 각각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31
- 13.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 32
- 14. 해외현지기업의 사업연도가 국내 과세기간과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33
- 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 시 출자금액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34
- 16.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제출을 위한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35

**제4장** 해외현지기업 철수 또는 매각 시 신고방법 37

- 17.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요? ..... 39
- 18.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40

**제2편** 해외부동산과 세금

**제1장** 해외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43

- 19.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어떠한 세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45
- 20.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46

**제2장**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세금신고 47

- 21.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49
- 22.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에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 50

- 23.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 51

**제3장** 해외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신고 53

- 24.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55
- 25. 국내 1가구1주택인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 56
- 26. 해외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56
- 27.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57
- 28.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 58
- 29.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59
- 30.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60
- 31.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신고한 임대소득은 언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61
- 32.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62

**제4장** 해외부동산 처분관련 세금신고 63

- 33.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후 당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 65
- 34.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66
- 35. 해외부동산 양도 후 현지국가에서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또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67
- 36.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68

- 37. 국내 2주택이상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69
- 38. 국내에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70
- 39. 해외부동산을 취득금액 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71
- 40. 해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72
- 41. 해외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74

**제5장 분양권 및 회원권 등의 세금신고** 75

- 42. 해외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골프장회원권 등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하나요? ..... 77

**제3편 해외주식과 세금**

**제1장 해외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81

- 43.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83
- 44.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85

**제2장 해외주식 직접투자자 세금신고** 87

- 45.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89
- 46.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 90
- 47. 해외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직접투자) ..... 91

- 4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92
- 49.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93

**제3장** 해외주식 간접투자자와 세금신고 97

- 50.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99
- 51.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 100
- 52.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난 국내설립 투자펀드를 환매하는데 왜 세금이 과세되나요? ..... 102

**참고자료**

◆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

- 1.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 107
- 2.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 114
-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117
- 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144
- 5. 증여세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153

◆해외직접투자절차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정리)◆

1. 해외직접투자란? / 159
2.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160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160
4. 해외직접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162
5.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 164
6.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현지국의 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 165
7.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 10% 미만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업체와 동반 투자하는 경우 신고방법은? / 166
8. 현물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167
9.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납세사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168
10. 외국법인의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 169
11.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9
12. 현지법인 설립 후 또는 설립과 동시에 공장 또는 자회사를 다른 국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170
13.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나요? / 170
14. 종교단체, 협회, 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 171
15. 이미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71
16. 해외투자자금의 송금과 현물반출 방법은? / 172
17.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하려고 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73
18. 해외직접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175



## 제 1 편

# 해외직접투자자와 세금



### 제1장

해외직접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및 신고방법 / 9

### 제2장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안내 / 21

### 제3장

소득세신고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 25

### 제4장

해외현지기업 철수 또는 매각 시 신고방법 / 37



## 제 1 장

# 해외직접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및 신고방법



1.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11
2.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14
3. 해외현지기업으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및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공제방법은? / 16
4.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 선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8
5.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해외투자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19





## 1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sup>1)</sup>를 한 경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 ● 취득단계

- 해외직접투자로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특수관계자 포함)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가 번 소득으로 투자하거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 변제 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 보유단계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외국법인<sup>2)</sup> 등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등 지분취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해외개인사업체<sup>3)</sup>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와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2)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3호)

3) 해외개인사업체라 함은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후술하는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처분단계

- 해외현지법인<sup>4)</sup>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일 해외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는 증여세(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사업정리) 양도소득세(투자주식 처분)	증여(상속)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이자, 배당, 사업	사업, 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이자·배당 : 14% 또는 누진세율* 사업 : 8%~35% (누진세율)	종합소득 : 8%~35% (누진세율) 양도소득 : 20% 또는 10% (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4) 해외현지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 해외직접투자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신고의무

취득 단계	<p>□ <b>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li> </ul>
보유 단계	<p>□ <b>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li> <li>○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li> </ul>
처분 단계	<p>□ <b>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 과세가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li> </ul> <p>□ <b>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li> </ul>

##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45조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18조의 2~제118조의 8



## 2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예 : 이자·배당·사업소득)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또한 국내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자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 해외직접투자자로 발생한 소득이 5백만원인 갑과 을의 국내 사업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6천만원, 6백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6%(누진세율)와 8%로 다르므로 세 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의 초과액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의 초과액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의 초과액의 35%

● 해외직접투자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주민세 별도)입니다.

-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 종합소득세율 개정(2008.1.1 이후 적용)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점주주(통상 25% 이상) 지분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통상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지분 양도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에서 조세조약 내용 확인 가능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각 국가의 조세조약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55조, 제118조, 제118조의2, 제118조의5



### 3 해외현지기업으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신고 방법 및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공제방법은 ?

●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 후 해외현지기업(해외현지법인 및 해외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취 시 이자소득으로, 해외현지기업인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해외현지기업 투자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현지국가의 세무당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국가와 소득이 발생한 소득원천지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으며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식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세액만 해당됩니다<sup>6)</sup>.

- 따라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매출세, 가산세, 가산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55조, 제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6)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 선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sup>7)</sup>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text{공제 한도} = \text{당해 과세기간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부를 항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전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7)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 따라서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2팀-991, 2007.5.23)



## 5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해외투자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sup>8)</sup>.

- 만일 아버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명의로 해외직접투자 형식을 이용하여 송금하고, 이 자금을 아들이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동 송금자금에 대하여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sup>9)</sup>.

###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1조

8)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9)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8조



## 제 2 장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안내



6.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 23
7.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24







## 6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해외현지기업<sup>10)</sup> 고유번호<sup>11)</sup>는 국세청에서 세무관리 목적으로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해외투자 신고수리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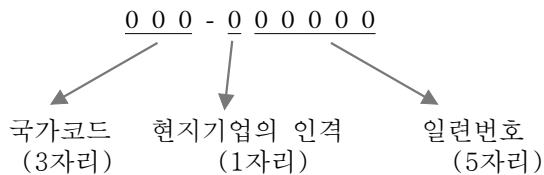
● 고유번호는 “000-000000” 형태의 9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 첫 3자리는 국가코드

- 뒤 6자리 중 첫 번째는 현지기업의 인격<sup>12)</sup>

(1 : 현지법인, 5 : 해외개인사업체, 9 :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 나머지 5자리수는 진출국의 일련번호를 의미합니다.



※ 주요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대한민국	100	싱가포르	164	프랑스	321
중 국	112	베트남	185	독 일	324
홍 콩	120	브라질	209	헝가리	329
인 도	124	캐나다	213	아일랜드	334
인도네시아	125	미 국	275	이탈리아	335
일 본	130	벨기에	306	룩셈부르크	341
말레이시아	143	체 코	310	네델란드	350
몽 골	145	덴마크	313	러시아	366
필리핀	155	영 국	316	뉴질랜드	446

10) 해외현지기업이란 ‘현지법인’, ‘해외개인사업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총칭합니다.

11)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세무서장이 세무관리 목적으로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입니다.

12) 현지기업의 인격이란 ‘현지법인’, ‘해외개인사업’,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통하여 투자자가 신규로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국세청(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도 기부여된 고유번호 및 해외현지기업 현황의 정정이 필요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세적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해외현지기업 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유번호는 해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투자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한 외국환은행에 오류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으로 신고수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정확한 투자내용으로 수정하여 드립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 제 3 장

# 소득세신고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8. 국세청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무엇이고 언제 제출하나요? / 27
9.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개인사정으로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28
10.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해외개인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 29
11.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한 사실은 없고 주식만 취득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 30
12. 해외현지기업에 공동투자한 경우 각각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31
13.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 32
14. 해외현지기업의 사업연도가 국내 과세기간과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33
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 시 출자금액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34
16.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제출을 위한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35





## 8 국세청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무엇이고 언제 제출하나요 ?

●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하고 투자자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모두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해외현지기업에는 현지법인<sup>13)</sup>, 개인사업체<sup>14)</sup>, 연락사무소 및 해외지사<sup>15)</sup>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제출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만 제출)

■ 해외지사명세서(해외에서 개인사업체, 지사,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매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시에 해외현지기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 1) 한국에 거주하는 홍길동씨가 미국에서 개인명의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인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한국에 거주하는 일지매씨가 캐나다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당 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고유번호 뒤 6자리 중 첫 번째 번호가 1 번으로 시작

14) 고유번호 뒤 6자리 중 첫 번째 번호가 5 번으로 시작

15) 고유번호 뒤 6자리 중 첫 번째 번호가 9 번으로 시작



## 9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개인사정으로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송금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 또는 투자국가의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또는 해외지사명세서와 설립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지법인 투자신고 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설립사유서<sup>16)</sup>

■ 개인사업체·지사연락사무소 투자신고 시 : 해외지사명세서, 미설립사유서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투자자 개개인의 사유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고 안내문이 계속하여 발송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세무관서 방문, 홈택스<sup>17)</sup>,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16) 미설립사유서는 별도의 신고양식이 없으므로 설립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17) 홈택스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납부 없이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홈택스 인터넷주소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10

##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해외개인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sup>18)</sup>.
- 거주자 개인이 해외에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해외개인사업체는 해외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캐나다에서 카센타를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라면 해외지사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개인사업체 또는 개인사무실을 운영할 때에는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고시 > 국제조세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국세청 제2008-3호)' 다운로드

18)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 11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한 사실은 없고 주식만 취득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제출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  
이므로

-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주식(지분)만 취득한 해외직접투자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입니다.
  - 현지법인 투자 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만 제출합니다.)
  - 개인사업체·지사·연락사무소 투자 시 : 해외지사명세서





## 12

## 해외현지기업에 공동투자한 경우 각각 해외현지기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해외현지기업에 공동투자한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개인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해외지사명세서)는 공동투자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투자지분이 가장 큰 거주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즉,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경우<sup>19)</sup>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김투자씨와 이지분씨가 각각 60%(6억), 40%(4억)씩을 공동투자하여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김투자씨와 이지분씨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투자금액이 가장 큰 김투자씨만 제출하면 되고  
이지분씨는 동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19) 투자금액이 10%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3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진출국가의 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재무제표 내용을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만 제출합니다.
    -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명세서의 해당란에 재무제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는 현지화폐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원화환산 기준
    -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에는 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 원화로 환산된 금액은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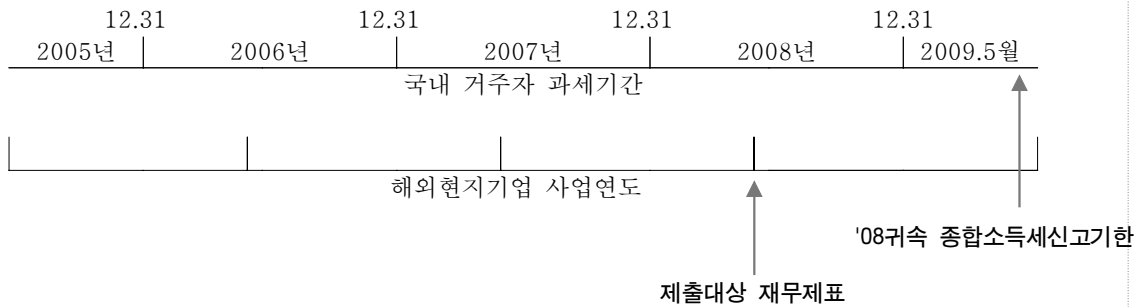


## 14

## 해외현지기업의 사업연도가 국내 과세기간과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현지기업<sup>20)</sup>의 사업연도는 국가별 회계기준 또는 사업형편상 국내 과세기간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국내 과세기간에 맞추어 가결산 하실 필요 없이 국내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출국가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맞추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sup>21)</sup>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 해외현지기업은 현지법인, 개인사업체,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총칭합니다.

21)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에는 현지기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현지기업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 시 출자금액은 무엇을 기재 하나요?

-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기재하는 출자금액은 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을 기재합니다.
  - 다만,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원화로 환산 시 적용환율<sup>22)</sup>은 투자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입니다. 즉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화평가손익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금액 기재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sup>23)</sup>은
    - 대차대조표 항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며
    - 손익계산서 항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의 원화환산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23) 국세청고사 제2008-3호, 2008.1.31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요령 참조



# 16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제출을 위한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에서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고시 > 국제조세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국세청 제2008-3호)’ 다운로드



## 제 4 장

# 해외현지기업 철수 또는 매각 시 신고방법



17.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요? / 39
18.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40







## 17

##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 하여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현지기업이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경영상의 애로 등의 사유로 문을 닫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잔여 재산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이때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신고기관(외국환은행)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sup>24)</sup>.

● 폐업 또는 해산일까지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사본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첨부하여 폐업 또는 청산일 현재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1~5.31)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폐업·청산을 하고도 그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안내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안내문이 계속하여 발송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24)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서식 하단의 청산(폐업)일에 지분 양도일을 기입하고 양도가액을 회수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매년 5.1~5.31)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 해외투자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미국에 2억원(지분 100%)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던 중 2008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지법인 지분 전체를 3억원에 양도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주식 양도일을 기재하고 주식 양도일까지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작성하여 2009년 5.1~5.31 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주민세 별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하시면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118조, 제118조의2, 제118조의5

## 제 2 편

# 해외부동산과 세금



### 제1장

해외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 43

### 제2장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세금신고 / 47

### 제3장

해외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신고 / 53

### 제4장

해외부동산 처분관련 세금신고 / 63

### 제5장

분양권 및 회원권 등의 세금신고 / 75



## 제 1 장

# 해외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19.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어떠한 세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45
20.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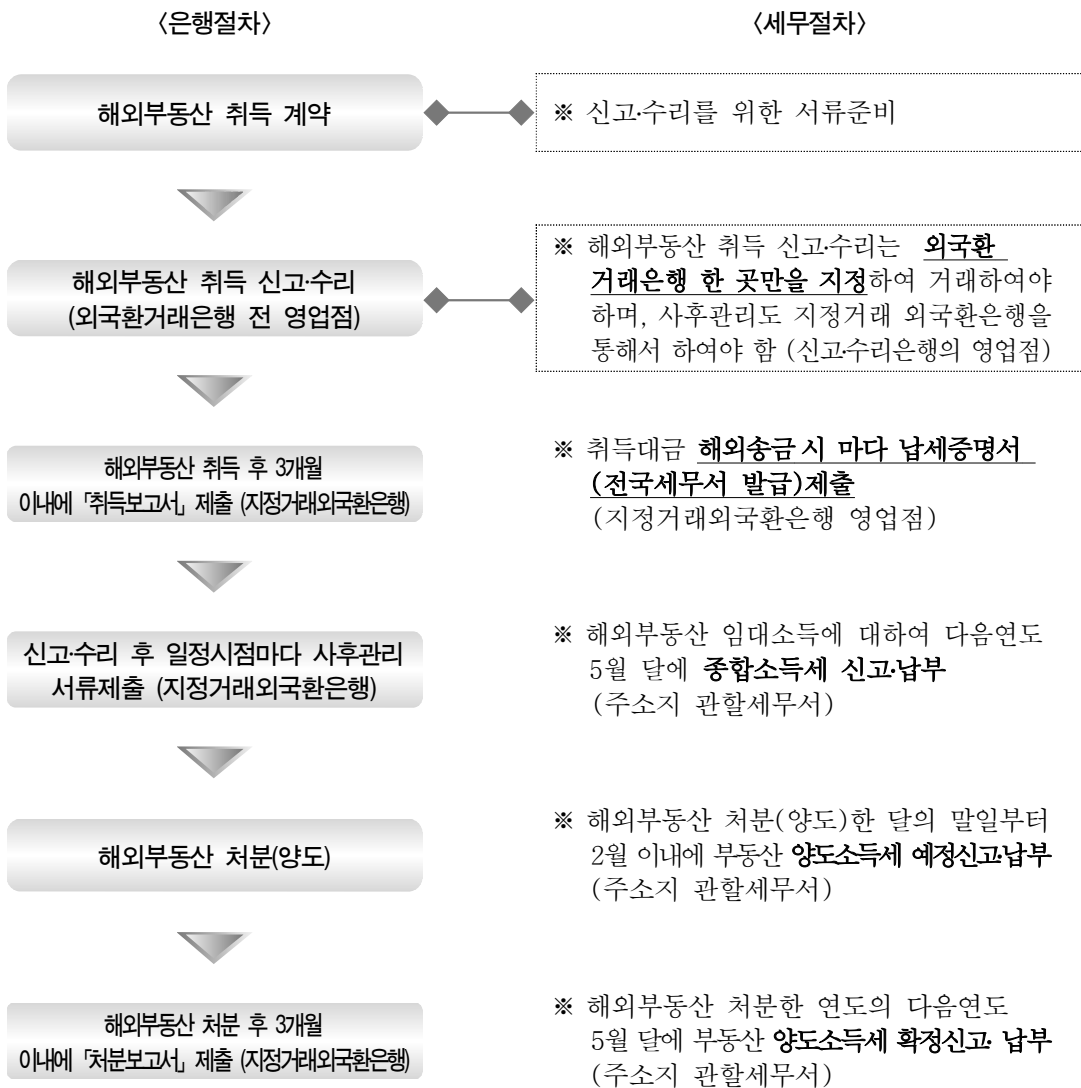




## 19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어떠한 세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투자운용(임대)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8%~35%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b>취득 단계</b>	<p>□ <b>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li> </ul>
<b>보유 단계</b>	<p>□ <b>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li> </ul>
<b>처분 단계</b>	<p>□ <b>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li> <li>○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li> </ul>



## 제 2 장

#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세금신고



21.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49
22.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에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 50
23.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 51





## 21

##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즉 국내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증여받은 자를 기준으로 증여전 10년간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예

국내 거주자인 나바른씨가 중학생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 캐나다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본인과 자녀명의로登記하였다면 나바른씨와 자녀는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나바른 : 10억원 ÷ 2 - 6억원(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과세미달

자녀 : 10억원 ÷ 2 - 1천5백만원(미성년자) = 485,000,000원

- 자녀의 증여세 부담세액

산출세액 : 485,000,000원 × 20%(누진세율) = 87,000,000원

신고·납부세액 : 87,000,000 - 8,700,000(신고세액공제) = 78,300,000원

※ 나바른씨와 자녀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남편(아버지)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

근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1조, 제47조, 제53조, 제68조, 제69조



## 22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에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득자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은 없습니다.

- 다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실 없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라면 취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1~5.31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에 등기부등본, 부동산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해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를 주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매년 발생한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이때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는 투자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참조

###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1조, 제47조, 제53조, 제68조, 제6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23

##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해외주택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자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 자금출처 소명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추정 제외 : 미 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범위 예시

-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 - 공과금상당액]
- 이자·배당·기타소득 :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부동산소득 : [소득금액 - 공과금상당액]
- 급여소득 : [총급여 - 원천징수세액]
-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 근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제 3 장

# 해외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신고



24.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55
25. 국내 1가구1주택인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 56
26. 해외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56
27.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57
28.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 58
29.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59
30.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60
31.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신고한 임대소득은 언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61
32.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62







24

##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주택, 상가, 기타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동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기본통칙 3-3.)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소득에 대하여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 세액공제 방법 : 다음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산입방법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25 국내 1가구1주택인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해외주택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은 월세 등을 의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sup>25)</sup>.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2



### 26 해외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장부 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제 증빙을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208조

25)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27

##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 필요경비 :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http://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 28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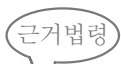
●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남은 미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 또는 이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내에 관련사항을 신고 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장 추계신고 시는 적용받지 못함



· 소득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29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해외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아래 산식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특례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

$$\text{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개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① 소득금액을 장부기장한 경우

$$\text{간주임대료} = \left( \begin{array}{l} \text{당해과세기간의} \\ \text{보증금등의 적수} \end{array} - \begin{array}{l} \text{임대용부동산의} \\ \text{건설비상당액 적수} \end{array} \right) \times \frac{1}{365}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26)}$$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text{간주임대료} = \text{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times \frac{1}{365}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단,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금액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26)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2007년 상반기는 4.2%, 2007년 하반기는 5%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07-36호, 2007.12.26)



31

##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신고한 임대소득은 언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해외발생소득 포함)에 대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명	근거규정
복식부기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li> <li>• 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 관련서류 등 (예)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li> </ul>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1) 동 별지 46호 서식 등 (예) 동 별지 53호 서식
간편장부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li> <li>•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li> <li>•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li> </ul>	동 별지 40호 서식(1) 동 별지 82호 서식 동 별지 82호 서식 부표
기준경비율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신고서에 포함) 및 주요경비지출명세서</li> </ul>	동 별지 40호 서식(1)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단순경비율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li> </ul>	동 별지 40호 서식(4)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첨부)</li> <li>•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li> </ul>	동 별지 11호 서식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참조

근거법령

· 상기 표의 근거규정 참조



## 32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참조

-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
- 해외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고 투자운용(임대)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재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② 부동산임대소득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식(별지 제40호서식(1)) 9쪽 참조

- 소득구분코드는 '30(부동산임대소득)'으로 기재
- 사업장소재지는 '9(국외)'로 하고 소재지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소재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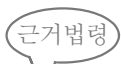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 US

- 해외부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으며 주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를 기재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http://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주택임대 : 701102

- 해외부동산 임대 세부내역 기재

### 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70조



## 제 4 장

# 해외부동산 처분관련 세금신고



33.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후 당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 65
34.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66
35. 해외부동산 양도 후 현지국가에서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또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67
36.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68
37. 국내 2주택이상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69
38. 국내에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70
39. 해외부동산을 취득금액 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71
40. 해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72
41. 해외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74





33

##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후 당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sup>※</sup>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국내에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입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 따라서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34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만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 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합니다. 특히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5



35

## 해외부동산 양도 후 현지국가에서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또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국내에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면 동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 세액공제 방법 : 다음 금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text{세액공제액} = \text{MIN}(\text{①}, \text{②})$$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text{② 한도액} : \frac{\text{당해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text{양도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text{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산입 방법 : 국외자산 양도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 예를 들어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을 국내에 세금을 더 내면 되며, 반대로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18%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제118조의8



## 36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해외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장기할부조건외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므로 외화의 환산도 그 시기에 수령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아 그날의 환율을 적용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z.biz](http://www.smbz.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매매기준율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37

## 국내 2주택이상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국내에서 1가구 2주택이상 소유한 자 및 미등기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부동산(해외주택 포함)의 경우 '07.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주택수에 관계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08.1.1.이후 양도분부터는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택과 국내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 차이점(예시)

적용항목	해외주택	국내주택
● 1가구1주택 비과세	● 적용없음	●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없음(2008.1.1. 양도분부터)	● 적용(요건 충족시) - 2(3)주택 소유자 적용배제
● 적용세율	●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	●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 - 2(3)주택 소유자 중과세율
● 기준시가규정	● 적용없음	● 적용(요건 충족시)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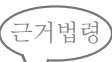
## 38 국내에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 해외부동산(해외주택 포함) 양도의 경우 국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종류	보유기간	적용세율('08.1.1.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1천만원 이하	9%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 국내에 있는 주택을 3개(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제2호의5,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118조의 5





39

## 해외부동산을 취득금액 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해외부동산의 양도차손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세청 서면4팀-962, 2005.6.16 외)

- 다만,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규정(소득세법 제92조)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외자산도 ①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②주식 또는 출자지분(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으로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①, ②호별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위 ①, ②호별 다른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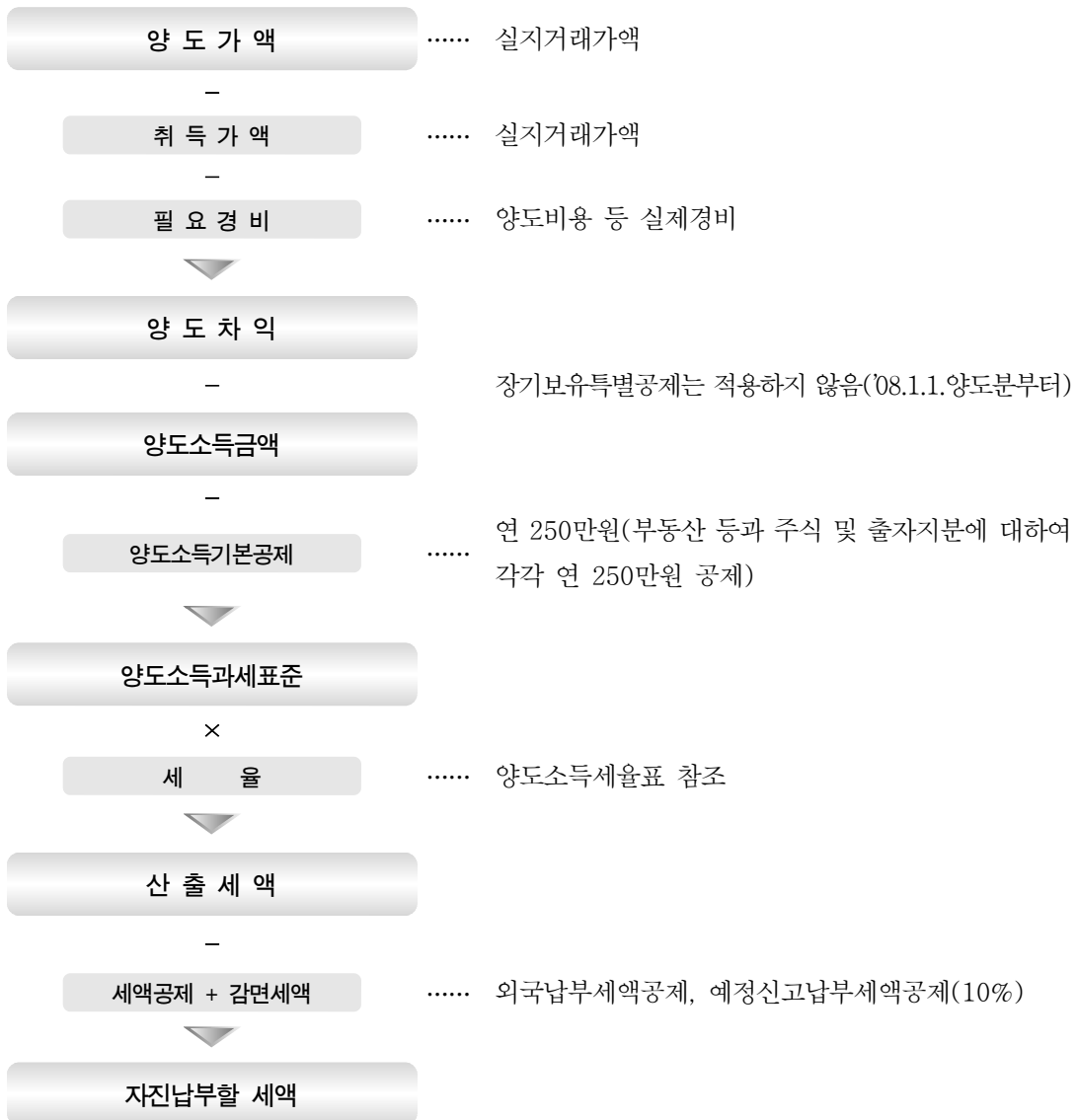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02조, 제118조의8,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



## 40 해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동일합니다.



●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 해외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sup>\*</sup>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3) 참조

-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내역을 작성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sup>\*</sup>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1) 참조

- 세율구분과 자산종류 코드 등은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을 참조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sup>\*</sup>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참조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국외분 소계에 기재하여 세액계산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서류 첨부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2조, 제118조의 2 ~ 제118조의 8



## 41 해외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국내 거주자가 보유하던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 이면 증여받은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증여자가 일정한 경우(외국에서 그 국외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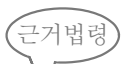
※ 본책자 참고자료 중 '5.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식(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참조

- '③소재지'의 「국외재산국가명」에는 국외재산 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⑥평가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 '⑦평가기준'은 '시가'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증여재산 내역,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평가관련서류 등 첨부

###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5.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 '⑨증여일'을 적고 '⑩종류'에는 '부동산'이라고 적으며, '⑪~⑭'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적은 내용을 옮겨 적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0조, 동법시행령 58조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 5 장

# 분양권 및 회원권 등의 세금신고



42. 해외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골프장 회원권 등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하나요? / 77





42

## 해외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골프장 회원권 등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하나요?

- 해외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 예정인 사업자로부터 동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sup>27)</sup>를 취득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등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 해외 골프장이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나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취득단계에서는 동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은 물론 최종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특수관계자 포함)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유기간 중에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처분 시에는 처분가액과 당초 분양 및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제1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178조의 2

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 분양권·당첨권을 의미합니다.

예

- 1) 소득원이 없는 거주자 A(25세)가 미국에서 신축중인 건물의 상가 1개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6억원으로 분양받고 준공 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 5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라면
  - \* 증여세 신고·납부 시 예상세액
    - 과세표준 :  $600,000,000 - 30,000,000(\text{증여재산공제}) = 570,000,000\text{원}$
    - 산출세액 :  $570,000,000 \times 30\%(\text{누진세율}) = 171,000,000\text{원}$
    - 납부세액 :  $171,000,000 - 71,100,000(\text{신고세액공제}) = 99,900,000\text{원}$
  - \*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 임대소득금액
    - 임대수입 :  $500\text{만원} \times 12\text{월} = 6\text{천만원}(\text{필요경비 } 3\text{천만원으로 가정})$
    - 임대소득금액 :  $60,000,000 - 30,000,000(\text{필요경비}) = 30,000,000\text{원}$
    -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 :  $30,000,000\text{원}$
  
- 2) 위 상가를 3년 보유 후 10억원에 처분한 경우(2008년 양도로 가정)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예상세액
    - 과세표준 :  $10\text{억원} - 6\text{억원} - 2,500,000\text{원} = 397,500,000\text{원}$
    - 산출세액 :  $397,500,000 \times 36\%(\text{누진세율}) = 143,100,000\text{원}$
    - 납부세액 :  $143,100,000 - 13,140,000(\text{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29,960,000\text{원}(\text{주민세 } 10\% \text{ 별도})$
    - 양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3) 소득원이 없는 거주자 B(23세)가 미국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을 2억원에 취득하여 본인이 사용한 경우(취득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음)
  - \* 증여세 신고·납부 시 예상세액
    - 과세표준 :  $200,000,000 - 30,000,000(\text{증여재산공제}) = 170,000,000\text{원}$
    - 산출세액 :  $170,000,000 \times 20\%(\text{누진세율}) = 34,000,000\text{원}$
    - 납부세액 :  $34,000,000 - 12,400,000(\text{신고세액공제}) = 21,600,000\text{원}$
  - \*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보유기간 중 시설물이용권 운용소득은 발생하지 않음



## 제 3 편

# 해외주식과 세금



### 제1장

해외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 81

### 제2장

해외주식 직접투자자 세금신고 / 87

### 제3장

해외주식 간접투자자 세금신고 / 97



## 제 1 장

# 해외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 43.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83
- 44.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85





## 43

##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sup>28)</sup>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직접투자의 경우)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배당	주식 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14% 또는 누진세율*	20%(중소기업 10%) (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14% : 상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8) 직접투자란 거주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투자란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직접투자자의 경우)

취 득 단 계	<p><b>□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li> </ul>
보 유 단 계	<p><b>□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li> <li>○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li> </ul>
처 분 단 계	<p><b>□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li> </ul>

44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이용하여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투자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주식(벤처기업주식 포함) 소유 <b>소액주주*</b> 의 장내거래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코스닥시장(벤처기업 포함) : 지분율 5%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과세	<b>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b> · 중소기업주식 : 세율 10% · 대주주요건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 세율 20% 또는 30%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20% (중소기업주식 <sup>29</sup> )은 세율 10%
간접 투자	국내 펀드 (배당)	국내 주식	비과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sup>**</sup>
			과세	비상장기업 주식양도차익 분배금
	해외 주식	비과세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sup>**</sup> ('09.12.31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과세	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역외 펀드 <sup>30</sup> (배당)	국내 주식	과세	과세
해외 주식		과세	과세	

※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거나 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임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제94조, 제118조의2, 조특법 제91조의2

29)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30)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합니다.





## 제 2 장

# 해외주식 직접투자자와 세금신고



- 45.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89
- 46.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 90
- 47. 해외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91
- 4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92
- 49.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93





45

##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17조



## 46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부담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 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국내 거주하는 김투자씨가 국내 부자증권을 통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A의 주식을 1,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아 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김투자씨는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 : 1,000원 × 20% = 200원(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주민세 별도(납부할 세액의 10%)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57조, 제118조의2



47

## 해외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

- 해외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 (1.1~12.31)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기 손해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서면4팀-962, 2005.6.16 외)

**예** 국내 거주하는 이투자씨가 해외주식 A를 1,000원에 취득하여 3,000원에 양도하고, 해외주식 B를 5,000원에 취득하여 4,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A의 양도차익 2,000원과 해외주식 B의 양도차손 1,000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 : 1,000원 × 20% = 200원(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주민세 별도(납부할 세액의 10%)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2조,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



## 4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a.biz](http://www.smba.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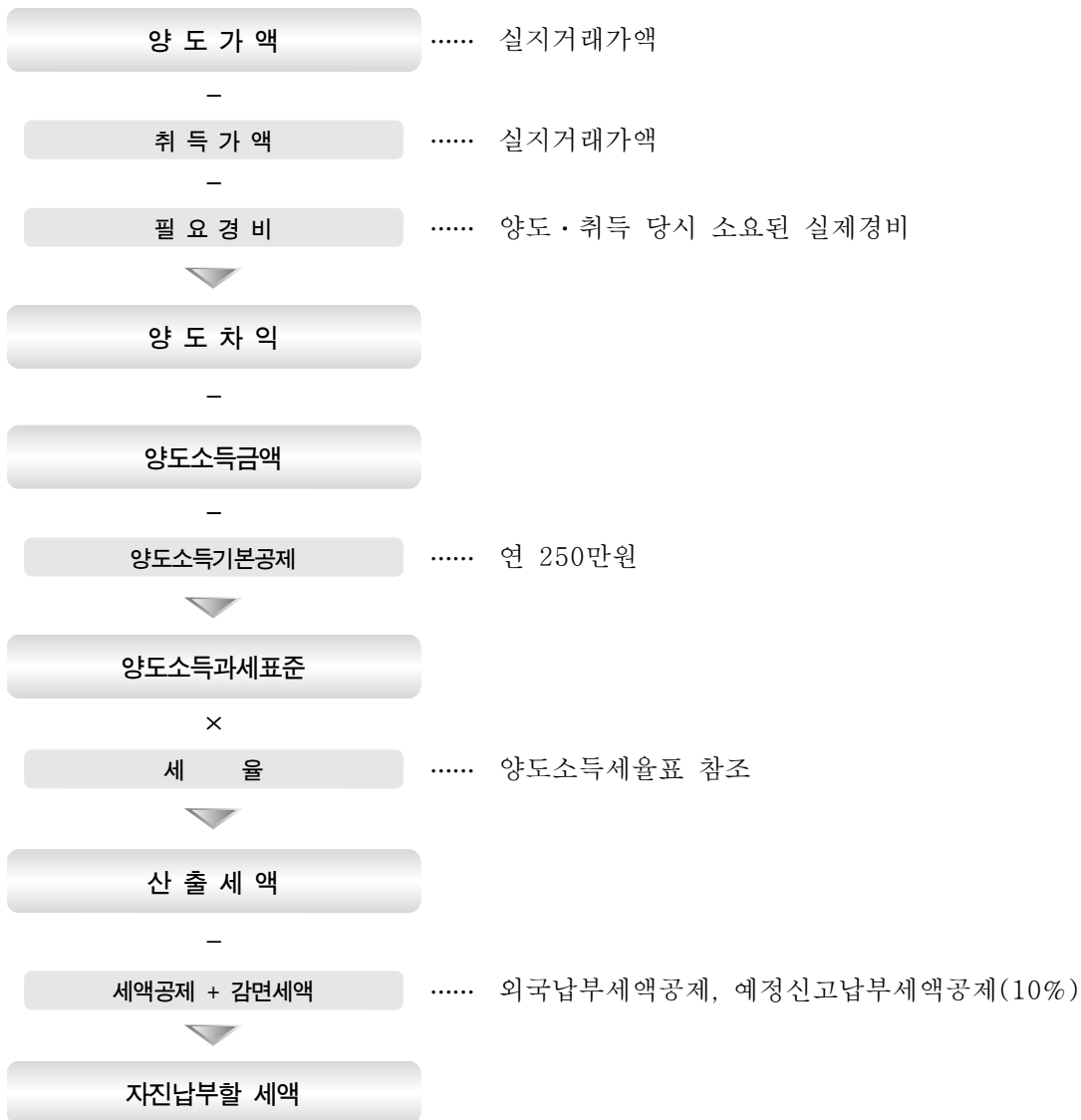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49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동일합니다.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거래내역서
- 해외주식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만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1~5.31) 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하며 특히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참조

- 주식종목명란에는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
- 주식종목코드란은 해외주식 발행법인 소재 국가명을 기재
- 주식종류코드란 등은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의 작성방법 참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 '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별지 제84호서식) 참조

- 주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국외분 소계에 기재하여 세액계산
-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첨부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2조,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5



## 제 3 장

# 해외주식 간접투자자와 세금신고



50.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99
51.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 100
52.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난 국내설립 투자펀드를 환매하는데 왜 세금이 과세되나요? / 102





50

##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예** 간접투자기구(투자펀드)에 자금을 제공하고 간접투자기구가 제공받은 자금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분배 받는 경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가 있습니다.

- 참고로 국내 법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아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펀드를 역외펀드라고 합니다.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투자펀드)의 종류

- 투자신탁 : (예 : ○○투자신탁, ○○투자신탁운용 등)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 투자회사 : (예 : Mutual Fund 등)  
회사의 재산(투자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 투자전문회사 : (예 : PEF(Private Equity Fund) 등)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



## 51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고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간접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이익은 과세대상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지급받은 소득 중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대상 소득〉

-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 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 ③ 국외에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sup>31)</sup>
  -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은 과세대상임
  -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펀드(역외펀드)의 경우에는 상기 ①~③의 거래로 인한 이익도 과세됨

●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31) 20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합니다.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4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62조 참조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17조, 제62조, 제1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조특법 제91조의2



## 52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난 국내설립 투자펀드를 환매하는 데 왜 세금이 과세되나요?

-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 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 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는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과표기준가격 산정시 제외됩니다.
-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투자펀드가 투자한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일치
  -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의 평가·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평가·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상기 주식의 평가·매매차익(차손)은 기준가격에 반영되나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표 기준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음



-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은 주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나 보유주식의 배당 등의 영향으로 과표기준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 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는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과표기준가격도 1,000원으로 가정) 투자펀드를 매입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기준가격 800원에 환매한 경우

※ 펀드 보유주식의 배당이 100원 발생하였다고 가정

- 투자자는 동 펀드를 1,000원에 매입하고 800원에 환매하여 2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 환매 시 과표기준가격은 1,100원이므로 차익 100원에 대하여는 세금이 원천징수됨(주민세 포함 15.4%)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

구분	매입일	환매일	투자대상별 손익구분	비고
기준가격	1,000	800	주식평가 △300 배당소득 100	200원 손실
과표 기준가격	1,000	1,100	배당소득 100	배당소득 100원발생 (15.4원 원천징수).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조특법 제91조의2





참고자료

#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 1.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2008. 1.31. 국세청고시 제2008-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국내 거주자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 (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 3. 해외지사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사무소 및 해외개인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

**제3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 명세서(붙임 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9호 (2007.4.25)는 이를 폐지한다.

【붙임1】 (2008.1.31.개정)

①성 명	<b>해외현지법인 명세서</b>			③거주자 과세기간		
				. .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④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b>I. 해외현지법인 투자 현황(총계)</b>						
⑤전기말 가동 법인수	당기 투자 변동사항			⑧당기말 가동 법인수 (⑤+⑥-⑦)	⑨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	
	⑥신설 법인수	⑦청산(폐업) 법인수				
<b>II. 개별 해외현지법인 현황(현지법인별 각각 작성)</b>						
<b>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b>						
현지법인명				현지기업고유번호		
투자국		투자일자	. . . .	현지납세자번호		
현지법인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본점과견직원수)	( )	현지법인전화번호		
<b>2.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현황</b>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주주) 현황 <span style="float:right">(단위 : %, 원)</span>						
현지법인 주주명(국가)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자
(본인성명) ( 한국 )						
( )						
( )						
( )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span style="float:right">(단위 : %, 원)</span>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 . .			
다. 청산(폐업) 여부 <span style="float:right">(단위 : 원)</span>						
청산(폐업)일자		청산유형		회수금액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작성요령

※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동 및 과세기간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각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⑨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는 붙임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해외현지법인수를 기재합니다.
2. 현지법인명과 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3. 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재합니다.
4. 직원수는 국내본점과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본점과견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현지법인 주주명(국가)는 본인을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에 한해 기재하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기재합니다.
6. ,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15.3)까지 기재합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단, 본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폐업)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기재하며, 투자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9.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중에 결의된 본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10.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11. 현지법인을 청산(폐업)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대여금회수, 현지법인폐업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붙임2】 (2008.1.31.개정)

①성 명		<b>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b>		③거주자 과세기간	
				. . . .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④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단위 : 원)					
⑤현지법인명			⑥현지기업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⑦적용환율 : )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⑧적용환율 : )		
I. 자 산 총 계	01		I. 매출액	27	
1. 현금과예금	50		1. 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 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 기타 매출	29	
3. 매출채권(기타)	03		II. 매출원가	30	
4. 재고자산	04		1. 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 유가증권	05		2. 기타 매입	52	
6. 투자유가증권	55		III. 매출총손익	56	
7. 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IV.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 대여금(기타)	07		1. 급여(모회사과건직원)	32	
9. 유형자산	08		2. 급여(기타)	33	
1) 토 지 및 건축물	09		3. 임 차 료	34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 연구개발비	35	
3) 기타유형자산	11		5. 대손상각비	36	
10. 무형자산	12		6. 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11. 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V. 영업손익	57	
II. 부 채 총 계	14		VI. 영업외수익	38	
1. 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1. 이자수익	39	
2. 매입채무(기타)	16		2. 배당금수익	40	
3. 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3. 채무면제익	53	
4. 차입금(기타)	18		4. 기타영업외수익	41	
5. 미지급금	19		VII. 영업외비용	42	
6. 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1. 이자비용	43	
III. 자 본 금 총 계	21		2. 기타영업외비용	44	
1. 자 본 금	22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 기타 자본금	23		IX. 법인세비용	47	
1) 자본잉여금	24		X. 당기순손익	48	
2) 이익잉여금	25				
3) 기 타	26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작성요령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대상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 증권투자, 대부투자 등 모든 투자금액을 투자 당시의 원화환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누계금액 기준임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1. 거주자의 과세연도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상황표를 작성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각각 적용한 환율은 ⑦적용환율, ⑧적용환율에 기재합니다.  
(기재 예 :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3. ⑥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3자리-6자리)를 기재합니다.
4. 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준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항목에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현금+ 단기예금+ 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대여금 등)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기재합니다.  
(예 :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붙임3】 (2008.1.31.개정)

①성 명	<b>해외지사 명세서</b>		③거주자 과세연도	
②주민등록번호				
<b>I.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b>				
④전기말 가동 지사수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⑦당기말 가동 지사수 (④+⑤-⑥)	
	⑤신설 지사수	⑥폐쇄 지사수		
<b>II.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b>				
<b>1. 해외지사 기본사항</b>				
⑧해외지사명		⑨현지기업고유번호		⑩소재지국
해외지사소재지				설립일자
설립형태	1.지점 2.사무소 3.해외개인사업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본점과견직원수)
			(            )	(            )
<b>2. 해외지사 경영현황</b> (단위 : 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⑩적용환율 :            )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⑪적용환율 :            )		
I. 자산총계	01		I. 매출액	08
1.토지및건축물	02		II.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III.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IV. 영업외수익	11
II. 부채총계	05		V. 영업외비용	12
III. 자본총계	06		VI. 법인세	15
(본점지원경비)	07		VII. 당기순손익	16
<b>3. 폐쇄 여부</b>				
⑫폐쇄일자		⑬회수금액		

##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 중 폐쇄한 지점, 연락사무소, 해외개인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각각 적용한 환율은 ⑯적용환율, ⑰적용환율에 기재합니다.  
(기재 예 :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2. ⑨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합니다.
3. ⑬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3.해외개인사업”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⑮직원수는 본점과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 본점에서 과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⑬설립형태 중 “1.지점”, “3.해외개인사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혹은 거주자 본인)이 해외지사로 송금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⑲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거나 해외개인사업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2.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붙임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1】 (2008. 5. 7.제정)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②주민등록 번호		③취득(소유)자 성 명		
④주소				⑤전화번호		
<b>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b>						
부동산 소재지	⑥국가			⑦신고수리은행	⑧신고수리번호	
	⑨소재지					
⑩취득일자	년 월 일		⑪취득목적	<input type="checkbox"/> 주거용 <input type="checkbox"/> 투자용		
⑫부동산의 종류	주택,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상가·건물 <input type="checkbox"/>	나대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⑬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⑮총 취득금액(A)=(B+C)	현지통화 :		(원화환산 :W            )			
⑯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		(원화환산 :W            )			
⑰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W            )			
<b>2. 공동취득인 경우</b>						
⑱공동취득자성명						
⑲주민등록번호						
⑳본인과 관계						
소유지분	%		%		%	
<b>3. 투자운용(임대) 명세</b> <span style="float: right;">(금액단위 : 원)</span>						
층·호수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상호(성명)	개시일 (입주일)	종료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 합 계
<b>&lt;첨부서류&gt;</b>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작성 방법

이 명세서에는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건에 대하여 취득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⑥, ⑨ : 부동산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⑬ :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기재(면적단위는 부동산등기부상의 면적단위로 기재)하고,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기재합니다.
3. ⑭ :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신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을 기재합니다.
4. ⑮, ⑯, ⑰ :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작성하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 )내 기재합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기재
5. ⑱~ :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기재합니다.
6. : 취득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1.1.)을 기재합니다.
7. : 당해 과세연도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재합니다.
8. , , :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단,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첨부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쪽)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세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제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1. ①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②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 세무대리인란을 적습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⑤~⑧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⑩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⑩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⑪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⑫ 세액감면명세서·⑬ 세액공제명세서·⑭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⑮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⑯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⑰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쪽의 ⑮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⑮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⑮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⑮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10. ⑱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각 서식에서 적을 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    )    5. 소득공제신고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세액공제·감면신청서(    ) 4. 조정계산서 (    )    8. 그밖의 첨부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sup>2</sup> (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3.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4. **㉢**과세표준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세율·**㉤**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6. **㉥**세액감면·**㉦**세액공제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7.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환급)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10.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제1쪽 10. 참조).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분납할 세액란에 적고, 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여야 할 나머지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란에 적습니다.
11. **㉯**주민세의 과세표준란: **㉠**종합소득세 합계란을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간에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 × 10%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세 율 표(2008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8	0	4,600만원 초과	26	522만원
1,200만원 초과	17	108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3쪽)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b>1 기본사항</b>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등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기조정 <input type="checkbox"/> 외부조정 <input type="checkbox"/> 성실납세 <input type="checkbox"/> 간편장부 <input type="checkbox"/> 추계-기준을 <input type="checkbox"/> 추계-단순을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자						
⑨장기업무	<input type="checkbox"/> 복식부기의무자 <input type="checkbox"/> 간편장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자						
⑩신고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input type="checkbox"/> 기한후신고 <input type="checkbox"/> 추가신고(인정상여)						
⑪환급금 계좌신고	⑫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⑬계좌번호			
⑭세무대리인	⑮성명	⑯사업자등록번호		-	-	⑰전화번호	
	⑮대리구분	⑱가장	⑲조정	⑳신고	㉑관리번호	-	㉒조정번호
<b>4 세액의 계산</b>							
구분		종합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공)					10%		
세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세-공-감)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계(세+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총세액(세-기)							
분납할 세액(45일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세-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 ⑤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11·12·13·15)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2  
 다. 그밖의 이자소득: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3. ②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 ⑥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21~28)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습니다.
  - 나. 기준금액(4천만원)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2  
※ 기준금액(4천만원) 이내의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26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 27
  - 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 에 의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8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대상금액란: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배당소득(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음
7. ⑦배당가산액란: [⑥대상금액×가산율(100분의 15)]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배당소득금액란: [⑤배당액+⑦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 ㉗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30  
나. 사업소득: 40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③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는 “1” 국외는“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 국제청홈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④총수입금액란 및 ⑩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㉗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⑥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다. 성실납세: 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⑦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7. ⑨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신고서 제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⑩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⑫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⑧총수입금액에서 ⑩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소득금액란: ⑧총수입금액에서 ⑨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㉗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㉗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⑪과세기간개시일·⑫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 31”로 기재합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기재하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0. ⑬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⑭특수관계자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가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⑮일련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3. ㉗상호(성명)·㉘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㉙소득세·㉚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하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9쪽)

⑦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②일련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신고유형코드									
⑦주업종코드									
⑧총수입금액									
⑨필요경비									
⑩소득금액(⑧-⑨)									
⑪과세기간개시일									
⑫과세기간종료일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⑧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1) 갑종(국내)근로소득(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51
    - (2)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2
    - (3)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3
    - (4) 을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5
    - (5) 을종근로소득(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6
    - (6) 을종근로소득[(4)·(5) 외의 을종근로소득]: 57
      - ※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0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7. ⑦소득금액란: ⑤총수입금액에서 ⑥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소득세·⑨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별 소득금액란: ⑤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⑥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⑦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 및 ⑧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2. ②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②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발생과제기간·②발생금액란: 직전 5개 과제기간과 해당 과제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제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2. ③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제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소급공제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제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그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의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3쪽)

㉑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수입배당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㉒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과제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30)							
사업소득 (40)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4쪽)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해당 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70세 이상인 자란에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고,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이상인 자란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란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란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6세 이하인 자란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적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 다. ㉨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2).
2. ㉩~㉪1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공제하고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은 ㉪의1란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차상당액을 해당연금소득범위내에서 20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4)
4. ㉬퇴직연금소득공제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 중 연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5. 특별공제(㉭~㉯)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및 제14항).
  - 나. ㉻기부금공제란: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 또는 ㉽을 한도로 합니다)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0항).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10%+ [종합소득금액×10%(2009.12.31까지는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20%(2009.12.31까지는 15%)
    - ㉼과 ㉽의 종합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 등 선순위공제대상 기부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입니다.
  - 다. ㉾혼인·장례·이사비공제란: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장례·이사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9항).
  - 라. ㉿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보험료공제란 내지 ㉾혼인·장례·이사비공제란의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표준공제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1항).
  - 마. ㊀특별공제합계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보험료공제란 내지 ㉾혼인·장례비·이사비공제란의 합계액 또는 ㉿표준공제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㊁기본공제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조문(제목)을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란은 적지 않습니다.
8.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맹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입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본 공제(명)				⑮보험료 공제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상인 자(명)			⑯의료비 공제			
	④65세 이상인 자(명)			⑰교육비 공제			
	⑤장애인(명)			⑱주택자금 공제			
	⑥부녀자			⑲기부금 공제			
	⑦6세 이하인 자(명)			⑳혼인·장례·이사비 공제			
	⑧출생·입양자(명)						
⑨계 (③~⑧)							
⑩다자녀 추가 공제				㉑표준 공제			
⑪인적 공제 합계(①+⑨+⑩)				㉒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⑳ 또는 ㉑)		
㉓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사업자 (⑯+⑰+⑲+㉒)		
⑫의1기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⑲+㉒)		
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⑭퇴직연금소득 공제							
㉔기본공제자 명세							
관계	성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직계비속의 배우자=7 (4, 5, 6, 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㉕「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㉖코 드	㉗금 액	㉘사업자등록번호
㉙「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㉚(①+㉓+㉔의1+⑬+⑭+㉒+㉘)

㉛코드

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6쪽)

###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해당 법 조문(제목)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의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 나.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④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④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다.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라 지급조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4. ③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연도란 및 ④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당기 환입액 및 ⑥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②코드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8쪽)

###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무신고가산세 · 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2.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3/10,000을 적용합니다.
3. ⑥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4항).
4. ⑩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 · 미신고가산세란 :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중 큰금액에 0.5/100을 적용합니다.
6. ①무신고가산세 · ②과소신고가산세 · ③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7. ⑤보고불성실가산세 · ⑥증빙불비가산세 · ⑦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⑧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 · 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㉞수시부과세액란 : 「소득세법」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 ·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이자소득란: ⑤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배당소득란: ⑥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㉞사업소득란: ⑦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명세서 ㉞란의 합계액과 ㉞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㉞근로소득란: ⑧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연금소득 · ⑩기타소득란: ⑧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⑪·㉞기납부세액 합계란: ①중간예납세액란 내지 ⑩기타소득란의 소득세 금액을 합계하여 ⑪란에 기재하며, ㉞수시부과세액란 내지 ㉞근로소득란의 농어촌특별세금액을 합계하여 ㉞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19쪽)

가산세명세서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부 신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50%)	
②과 소 신고	부 당 과 소 신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③초과환급신고	부 당 초 과 환 급	미 달 세 액		10/100	(50%)	
		초과 환급세액		40/100		
④납부(환급)불성실	미 납 부(환급)세액	미 납 부(환급)세액	( )	3/10,000	(50%)	
		미 납 부(환급)세액				
⑤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산서	미 교 부 불 명	공 급 가 액 불 명 금 액		1/100	
		미 교 부 불 명	공 급 금 액		1/100	
	계산서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빙 불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업용계좌 미사용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5/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5/100		
⑫신용카드매출 표미발급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미 납 세 액			10/100한도		
⑯납세조 합 불 납	미 납 세 액			5/100		
합 계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 또는 ㉞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㉞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⑤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15/100)을 적습니다.

7. ⑬·㉞·㉟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의 산출세액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⑥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큰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배당세액공제: ㉨란은 ⑫와 [(㉢-㉣)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21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 합계(⑤+⑥+⑦)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④+⑧)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 [☞×(14/100, 15/100)]	
☞ 기준초과금액(⑨-⑩)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배당가산액		☞ 소득공제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⑩+☞+☞)		☞ 기본세율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⑩×(14/100, 15/100)]			
☞ 비교산출세액계(☞+☞)			
☞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 [☞×(14/100, 15/100)]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계(☞+☞+☞)			
☞ 종합소득산출세액(☞외 ☞ 중 큰 금액)			
☞ 배당세액공제			
☞ [☞와 (☞-☞) 중 작은 금액]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22쪽)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 부동산임대소득은 “30”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40”으로 한다.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득구분코드		( )	( )	계( )	
② 일련번호					
③ 사업장소재지					
④ 과세기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 소득 금액	필 요 경 비	주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요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경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⑭)		
	※ 필요경비 계 (⑬+⑮)				
※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 금액[⑨×(1-※)]		
	※ 비교소득금액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 소득금액 (※ 또는 ※ 중 작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		₩		₩
임 차 료	₩		₩		₩
인 건 비	₩		₩		₩
계(※=⑪)	₩		₩		₩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24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등매매차익란: 1세대2주택 이상인 자 등의 주택등매매차익을 말하며,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금액(250만원,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세율란 :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산출세액란: ㉮란과 ㉮란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5.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제7쪽의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제9쪽의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 · 제11쪽의 ㊀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㊁소득금액란: 제13쪽의 ㊂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㊃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㊁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㊄소득공제란: 제15쪽의 ㊅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과 동일하며,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금액란의 ㊄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도 같아야 합니다.
6.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은 ㉿2주택매매차익란부터 ㊀미등기주택등매매차익란까지를 먼저 작성한 후 ㉻종합소득금액합계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25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⑧종합소득 금액 합계	주택등매매차익 구분							
		⑨합계 (㉑+㉒)	㉓주택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주택등매매차익					㉔미등기 자산매매 차익
				㉕합계 (㉖+㉗+㉘+ ㉙)	㉚2주택 매매차익	㉛3주택 매매차익	㉜비사업 용토지	㉝	
①총 수입 금액 (주택등매매가액)									
②필요 경비									
③소득 금액									
④소득 공제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250만원			0	
⑤과세표준									
⑥세율 (8~35%, 50%, 60%, 70%)	8~35%		8~35%		50%	60%	60%	70%	
⑦산출세액	₩	₩	₩	₩	₩	₩	₩	₩	
<p>※ 참고사항</p> <p>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26쪽)

**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 또는 ㉔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㉔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⑤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26’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 ⑦ 위⑤·⑥ 외의 배당소득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 6. ⑫배당가산액란: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15/100]을 적습니다.
- 7. ⑬·㉔·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8. ㉖·㉗·㉘·㉙의 산출세액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⑥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㉑,㉒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㉑(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 ㉒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 9. ㉚·㉛·㉜ 소득공제란: ㉚소득공제명세서의 ㉚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 10. ㉝·㉞·㉟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11. ㊱배당세액공제: ㊱란은 ㉚와 [(㉔-(㉕와 ㉖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12. ㊲·㊳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의 ③소득금액의 ㉔합계(㉔+㉕+㉖+㉗)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08.4.29>

(27쪽)

<b>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b>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 합계(⑤+⑥+⑦)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④+⑧)		㉑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㉒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㉓ $[* \times (14/100, 15/100)]$	
㉔ 기준초과금액(⑨-⑩)		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㉖ 배당가산액		㉗ 종합소득금액(㉒)	
㉘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㉙ 소득공제	
㉚ 종합소득금액(⑩+㉖+㉘)		㉛ 과세표준(㉗-㉙)	
㉜ 소득공제		㉝ 기본세율	
㉞ 과세표준(㉚-㉜)		㉟ 산출세액	
㊱ 기본세율		㊲ 비교산출세액 계(㉟+㉝)	
㊳ 산출세액		㊴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㊵ $[* \times (14/100, 15/100)]$		㊶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㉞-㉟)	
㊷ 비교산출세액 계(㉟+㉝)		㊸ 기본세율	
㊹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㊺ 산출세액	
㊻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㉞-㉟)		㊼ 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㉞란 금액)	
㊽ 기본세율		㊾ 비교산출세액(㉟+㉝+㊼)	
㊿ 산출세액		㊽ 종합소득산출세액(㊹와 ㊾ 중 큰 금액)	
㊽ 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㉞란 금액)		<b>배당세액공제액</b>	
㊽ 비교산출세액(㉟+㉝+㊼)		㊽와 [(㉞-㊽와 ㊽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㊽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㊽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㊽ $[* \times (14/100, 15/100)]$			
㊽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㉕)			
㊽ 소득공제			
㊽ 과세표준(㊽-㊽)			
㊽ 기본세율			
㊽ 산출세액			
㊽ 비교산출세액 계(㊽+㊽+㊽)			
㊽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㉞-㉟)			
㊽ 기본세율			
㊽ 산출세액			
㊽ 비교산출세액 계(㊽+㊽+㊽)			
㊽ 종합소득산출세액 (㊽·㊽·㊽·㊽ 중 큰 금액)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08.4.29>

(앞쪽)

관리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① 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②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도소득금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세표준 (④+⑤-⑥)							
⑧ 세율							
⑨ 산출세액							
⑩ 감면세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수정신고가산세 등							
⑮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Ⅷ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Ⅷ 분납(물납)할 세액							
Ⅷ 자진납부세액							
Ⅷ 환급세액							
<b>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b>		<b>주민세 자진납부계산서</b>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Ⅷ 소득세 감면세액	Ⅷ 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Ⅷ 세율	Ⅷ 세율						
Ⅷ 산출세액	Ⅷ 산출세액						
Ⅷ 수정신고가산세 등	Ⅷ 자진납부세액						
Ⅷ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Ⅷ 환급세액						
Ⅷ 자진납부할 세액	<b>환급금 계좌신고</b>						
Ⅷ 분납할 세액	Ⅷ 금융기관명						
Ⅷ 자진납부 세액	Ⅷ 계좌번호						
Ⅷ 환급세액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일자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및 부표3,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②양수인란 :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양도자와의 관계 예시 :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3. ③세율구분란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상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⑥양도소득기본공제란 :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말합니다).
5. ⑨산출세액란 · ⑩감면세액란 · ⑪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⑫예정신고세액공제란 :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⑮수정신고가산세 등란 : 수정신고가산세 · 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0. ⑰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⑱환급세액란까지 :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환급금 계좌번호(☎·#)란 :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아. 비사업용토지 자. 미등기양도	1-10 1-15 1-20 1-21 1-22 1-25 1-28 1-26 1-30	9~36% 누진세율 40% 50% 50% 50% 60% 60% 60% 7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12 1-27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0%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1-91	10%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2-10 2-15 2-20	9~36% 누진세율 40% 50%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61 2-64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62 2-10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08.4.29>

(앞쪽)

관리번호	-	<b>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b>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b>□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b>					
①세율구분(코드)		합계	( - )	( - )	( - )
②소재지					
③자산종류(코드)			( )	( )	( )
거래일자	④양도일자				
	⑤취득일자				
거래자산 면적(m <sup>2</sup> )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b>□ 양도소득금액 계산</b>					
거래금액	⑨양도가액				
	⑩취득가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요 경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도소득금액					
⑯감면소득금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b>□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b>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개별·공동주택			
		상업용·오피스텔			
		일반건물			
	⑲토지				
합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개별·공동주택			
		상업용·오피스텔			
		일반건물			
	㉑토지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 작성 방법

1. ①세율구분란 :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 구분	소재지		세율 구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외)	비사업용 토지과다 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임주 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코드1		
코드	1	2	코드	10	15	20	21	22	25	28	26	30	10	15	20	10	27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양권	사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⑥총면적란 :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4. ⑦양도면적란 :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5. ⑩취득가액란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⑤번란의 금액)
  -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㉑+㉒)/양도시기준시가(㉓+㉔)]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6. ⑪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7. ⑫기타 필요경비란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8.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 토지·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3년 이상 : 10%, 5년 이상 : 15%, 10년 이상 : 30%,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 45%

※ 미등기자산 및 50% 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2주택 이상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9. ⑯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0. ⑰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⑱건물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개별·공동주택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 나. 상업용·오피스텔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일반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m<sup>2</sup>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2. ⑲토지란 :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㉑건물란 : ⑱건물란의 작성요령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4. ㉒토지란 :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개정 2007.4.17>

(앞쪽)

관리번호	-	<b>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b>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득유형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득일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요경비											
⑬양도소득금액(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 작성 방법

1. ①주식종목명란 :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 주권상장법인주식, 코스닥상장법인주식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하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식 종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 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2	13	31	32	33	21	22	23	41	42	43	51	62	61

4. ④취득유형란 :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 양도주식수를 기재하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7. ⑧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기재합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9. ⑫필요경비란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 장외주식(중소기업) 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 11    다. 취득유형 : 2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개정 2008.4.29>

(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 득 가 액	①타인으로 부터 매입 한 자산	매 입 가 액					
		취 득 세					
		등 록 세					
		기타 부대 비용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					
		소 계					
	②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③가산 항목	취득시 쟁송비	변호사비용				
			기타비용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기 타					
		소 계					
④차감 항목	감 가 상 각 비						
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 타 필 요 경 비	⑥자본적 지출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의를 위한 지출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피 난 시 설 등 설 치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 상 복 구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자산가치 증가 등 수 선 비					
		기 타					
		소 계					
	⑦취득후 쟁송비용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 화해비용					
	⑧기타 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토지 장애 철거비					
		도로시설비 등					
		사방사업소요비용					
	기 타						
	소 계						
⑨계 (⑥+⑦+⑧)							
양 도 비 등	⑩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각 차 손						
	⑫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10mm×297mm(일반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작성 방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2. ①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가산항목란: 취득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을 적습니다.
5. ④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자본적 지출액란
  -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기타비용란
  - 가. 수익자부담금: 「하천법」·「택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 나. 토지 장애철폐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폐비용을 적습니다.
  -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⑩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권 매매차손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 유의사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⑩번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란 기타필요경비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⑫번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명세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개정 2008.4.29>

(3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 번호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뒤 쪽)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 소재지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증여재산가액란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상 ㉢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10%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참고자료

# 해외직접투자절차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정리)



본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가이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 1 해외직접투자란?

-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와 행위<sup>주1)</sup>**를 말합니다.
  - 또한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sup>주2)</sup>**도 해외 직접투자에 포함됩니다.
-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신용상태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래 은행·과세관청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의 측면에서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주1) 거래와 행위

1.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 가. 임원의 파견
  -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주2) 자금의 지급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을 제외



## 2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해외직접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등 지급수단
-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본재)
-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해외법인,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 주식
-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 외화증권취득은 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②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③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즉 ①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과견 ②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 ③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 외화대부채권취득은 상기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급에는 ①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자금, ②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③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2항)



## 4

## 해외직접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다음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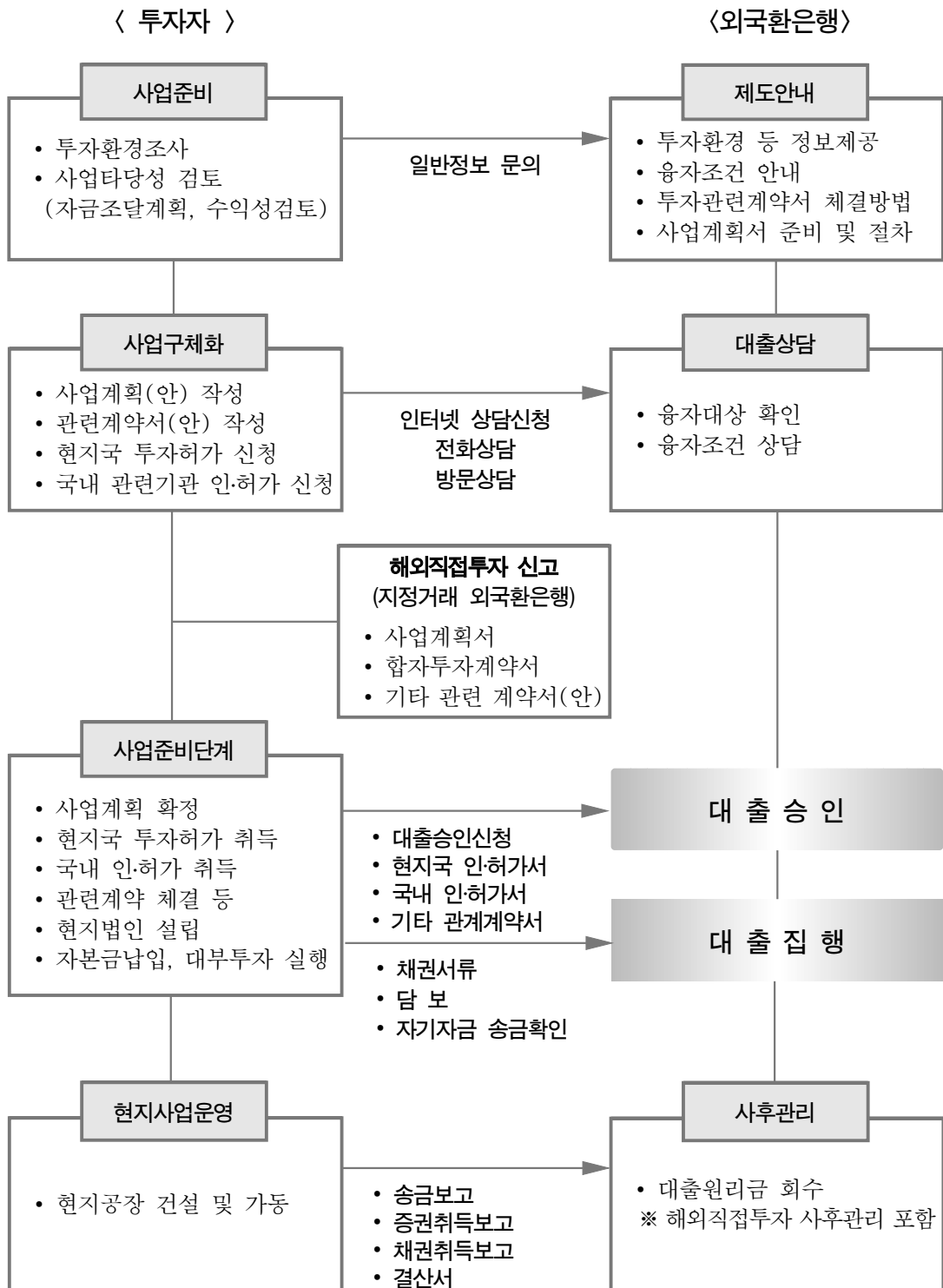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및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법인을 설립(인수 및 지분참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하면 됩니다.

※ 해외직접투자절차 개요





## 5

##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제출서류]

- ①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 ③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추가제출서류]

- ①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
- ② 합작투자시 합작계약서
- ③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 ④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⑤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관리 수리를 하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관련서류
- ⑥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 시 납세증명서 1부

## [보완서류]

- ①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 개인
- ②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 관계 당국 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③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현지국의 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

- 해외직접투자 시 해외공관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현지공관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실제로 영위하는지,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지역 내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대부투자시의 금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종전에는 현지 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 2001. 1. 1일부터 현지공관장의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기관의 공증만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07. 12. 17일부터는 공증도 받을 필요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 10% 미만으로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업체와 동반 투자하는 경우 신고방법은?

### ● 외국법인과 아무런 특수관계 없이 지분율 10% 미만으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에 의거 증권취득신고서(지침서식 제7-10호)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동일사업에 대한 국내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거주자(투자비율이 같은 경우 자본금 규모가 큰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 각각의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물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항이 있는지요?

- 해외직접투자자는 통화 등 지급수단 외에도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해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자본재와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 현물투자 신고 시 공통제출서류 외에 현물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현물투자 명세표를 간인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동 현물투자명세표에 근거하여 세관통관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 제출서류 3)
  - 그러므로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현물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한 현물투자명세표를 첨부하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 합작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물의 구체적 명세(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합작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현물투자가액을 국내에서 평가된 원화표시액에서 외화로 환산할 때에는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하며, 부가가치세와 동 현물을 투자 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6)
- 한편, 현물투자명세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세관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후 부득이 현물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납세사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할 경우 공통제출서류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투자자 확인서류가 있습니다.

－ 투자자 확인서류에는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 회사를 설립하여 납세한 사실이 없어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 증명)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 외국법인의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를 원인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11

##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는 공동투자에 해당됩니다. 공동투자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후의 지분율은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및 투자자 확인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 12

### 현지법인 설립 후 또는 설립과 동시에 공장 또는 자회사를 다른 국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현지법인 설립 후, 설립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공장 또는 자회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신고서 사본, 변경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내용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한편 설립과 동시에 공장 또는 자회사를 다른 국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직접투자 신고 시 자회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지법인이 공장을 어느 국가에 설치할 것인지는 달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13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나요?

- 1996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의 제한업종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자기 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보다 폭넓게 투자업종을 선택하여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1993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북방국가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06년 8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투자금액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14

## 종교단체, 협회, 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 비영리법인도 관계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성격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① 정관에 해당 사업의 표시가 있고 ②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예컨대, 학교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령과 학교법인 정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8)

● 비영리법인이 수익 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등에서 비영리법인에도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해외 비영리법인에 대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 15

## 이미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투자자명, 투자비율, 투자목적, 투자대상국가, 투자금액 등 당초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현지법인이 자회사나 손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① 신고수리서 내용 중 “투자금액” 항목은 감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고 증액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 16 해외투자자금의 송금과 현물반출 방법은?

- 해외투자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된 내용대로 해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지정된 송금은행(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신청)을 통하여 현지법인 계좌 또는 정당한 수취인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하여 수출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수출 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수출승인서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자가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현물출자)하였을 경우 송금 증명서류나 수출면장을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즉시 송금(현물출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외투자자금은 해외투자 유효기간(1년) 내에 송금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므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7) 유효기간 내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현지측 사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7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하려고 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 신고 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현지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국내투자자의 기업사정 등으로 현지법인을 청산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당해 신고 조건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지침서식 제9-14호)를 신고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청산 후의 분배잔여재산으로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보고를 필한 후 해외에서 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 신고 후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 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신고수리 유효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실효됩니다.

### <참고자료>

- 해산개시일 : 현지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현지국 법원에 해산등기를 한 날
- 청산종료일 :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현금 수취를 종료한 날
- 보고대상 잔여재산 회수내역
  -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
  - ② 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청산손익
  - ③ 회수되어야 할 재산 : (①±②)×한국측 투자비율
  - ④ 회수재산내역 : 회수일자별 회수재산의 종류 및 금액
  - ⑤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 부속서류

- ①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 ③ 잔여재산(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 증명서(송금처 명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 18 해외직접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 「외국환거래법」 상의 제재조치

- 해외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고조치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1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 「신용정보관리규약」 상의 제재조치

-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야 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 신용정보관리규약 (2007. 8. 31 개정)의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금융질서문란 정보
  - 등록사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 기록보존기간 : 5년
  - 집중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lt;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제공 &gt;

☞ 국내의 해외투자 관련 정보 지원기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등이 있는 바, 각 기관의 지원정보 내용,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지원 정보	연락처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국별 투자환경, 투자상담, 자금지원, 해외직접투자 통계	02-3779-6114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국별 투자환경, 파트너 알선, 자금지원	02-769-67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국별 투자환경, 투자상담	02-3460-7114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IDO) 서울사무소	투자상담, 파트너 알선	02-747-8191
산업연구원 (www.kiet.re.kr)	국별 투자환경	02-3299-314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국별 무역·투자환경	02-1566-5114

## 개인의 해외투자과 세금

---

발행일자 : 2008년 8월 일

발행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집필·편집 :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진욱  
행정사무관 이동운  
세무조사관 박일종  
세무조사관 김중국  
(Tel : 397-1437~1438)

인쇄 : 두합인쇄(Tel : 2285-0530)

---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1437~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질문을 기준으로 한 해설서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대한 법 적용은 관련 법조문을 재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